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85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영진 · 김준혁 · 노종면
백혜련 · 염태영 · 차지호
이해식 · 채현일 · 김승원
송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수십 년간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6조).
- 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 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 군 공항”이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에 위치한 제 10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수원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수원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시설·상업시

설·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 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
7. “이전부지”란 수원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8.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9.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8호에 따라 고시한 시·군·구를 말한다.
10.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 기본계획

제2장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등

제6조(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

는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
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와 그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9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
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 공항 이전
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

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 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이전사업 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

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⑤ 국가는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2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제13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는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 목적 변경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제시행 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

-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6조(중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특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부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부지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부지에서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려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수원시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1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사업의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자본 유치) 이전사업의 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26조(지역기업의 우대)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이전사업의 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

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